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오영탁 의원 등 8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2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2년 1월 11일

3. 개정이유

○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관계법령 명칭 변경

-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→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(안 제2조)
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(안 제10조, 제11조제2항)
-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(안 제12조제3항)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